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5. 3. 21.(금)

제424회 임시회

제 2 차 본 회의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
육성·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·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73 |
|----------|-----|

2025. 3. 21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제424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5년 3월 13일 상정의결)
- 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디지털 전환의 확대로 데이터의 생산과 가공 등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·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타 산업 규정과 혼재되어 있음
-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: (前)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·지원 조례 → (後) 충청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-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(안 제5조)
- 데이터산업 육성 (안 제7조)
- 빅데이터의 활용 (안 제8조)
-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 설치 (안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4조)
-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데이터와 인공지능(AI)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, 제조·금융·의료·교육·행정 등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. 데이터의 수집·분석·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산업은 AI 기술과 결합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
- 특히, 데이터 기반 혁신이 주요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됨에 따라, 국내외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·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. 이에 정부도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을 제정하여 데이터 기반 경제를 촉진하고 있으며,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

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임

- 충청북도 또한 데이터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, 스마트 제조, 바이오·헬스,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이를 위해 데이터의 생산·가공·유통을 촉진하고,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
-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의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규정이 타 산업과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.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5조는 기존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,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의 취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성이 인정됨
- 안 제7조는 본 조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육성 사업을 1호부터 10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됨

- 안 제8조는 교육·교통·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
- 안 제9조는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조 제2항 각 호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 심의·자문이 필요할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적절하다 판단됨
- 안 제14조는 산·학·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충청북도의 데이터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됨
- 안 제15조는 데이터산업의 기본 단위인 데이터를 생산·수집·처리·분석·제공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

다. 상위법령 등 검토

-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르면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” 고 되어있고,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각각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”,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

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” 고 명시하고 있음

- 이에 상위법령에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, 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,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의 개정은 타 산업과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 산업의 육성 근거 규정을 분리하고, 향후 체계적인 충청북도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중복의 여건에 맞게 데이터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육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데이터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필요성,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
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만의 선제적인 데이터 산업 발전과 산·학·연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육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술발전을 더욱 활성화하여 향후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는 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·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873호 |
| 의결 연월일 | . . . (제 회) |

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
육성·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자 | 이의영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5년 3월 4일 |

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·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73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 : 이의영, 김꽃임, 이옥규,
박경숙, 유재목, 이종갑, 임병운

1. 제안이유

- 디지털 전환의 확대로 데이터의 생산과 가공 등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·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타 산업 규정과 혼재되어 있음
-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(안 제5조)
- 데이터산업 육성 (안 제7조)
- 빅데이터의 활용 (안 제8조)
-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 설치 (안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4조)
-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(안 제1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
- 조례안예고 : 2025. 3.
- 협의 :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·지원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·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데이터”란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.
2. “빅데이터”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, 문자,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.
3. “데이터산업”이란 「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4. “공공데이터”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

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데이터산업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데이터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
3.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
4. 데이터산업의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
5. 데이터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
6. 빅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및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
7.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
8.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
9.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데이터산업 육성)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
2.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·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
3.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4.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
5. 지역산업체의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
6.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
7.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지원

8. 데이터산업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
9. 데이터산업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
10.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빅데이터의 활용) ① 도지사는 교육·교통·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주민생활, 산업, 복지,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
2.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·점검에 관한 사항
3.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
5. 연구개발 과제 선정·공모·평가에 관한 사항
6.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7. 벤처기업 창업·기술·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
8.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
9. 「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
10.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과학인재국장
 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나. 데이터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, 기업인,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
 - 다.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데이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사무위탁 등)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2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
4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5.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·기업·법인 및 단체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등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, 지도·감독 및 평가하고,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,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, 대학교,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5조(정보보호를 위한 조치)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·수집·처리·분석·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야 한다.

제16조(포상)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인공지능·데이터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”로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데이터”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, 실험, 조사,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...

5. “데이터산업”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·유통·거래·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,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